

[서식 예] 사실조회신청서 (구청,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확인)

사실조회신청

사 건 2000가합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〈〉〉 외 2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사실조회 할 곳

ㅇㅇ구청

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

2. 사실조회 할 내용

> 2000. 0. 0. 위 원고 000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

제출법원		수소법원	관련조문	민사소송법 제294조
제출부수		신청서 1부		
		법원은 공공기관・학교, 그 밖의 단체・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		
의	의	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		
'		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		
		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.		
		·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		
	타	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		
		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, 경험을 이		
		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,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		
		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		
		단할 수밖에 없으므로,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		
-1		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		
기 E		여부를 판단함에 있어	거서 그 견해어	기속되지 아니함(대법원 1998.
		7. 24. 선고 98다12270 판결).		
		·사실조회 회보가 공	문서인 경우 '	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
		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		
		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		
		한 원심판결은 채증	법칙위배의 위	법을 저지른 것임(대법원 1990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